

農地所有上限과 賃貸借許容에 관한 農民輿論

崔 益 秀

研究員, 農政輿論調查室

- I. 머리말
- II. 應答者의 一般의 背景
- III. 分析結果
- VI. 要約 및 結果

I. 머리말

우리나라의 農地制度는 農地改革後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農地法이 立法되지 못한 채 農地改革을 위하여 1949年 制定된 農地改革法을 援用하고 있어 農地制度 全般에 관한 立法이 要請되고 있다.

그 동안 農地法의 制定이 4~5回 試圖되었으나 그때마다 엇갈린 主張과 施行上의 곤란 등을 이유로 보류되어 오던중 금년에 다시 “80年代의 農業展望에 相應하는 農地制度 改善”이라는 側面에서의 研究結果를 토대로 한 農地法案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調査는 이러한 農地法案의 骨子인 上限線의 制限緩化 내지는 撤廢와 小作制(賃貸借)의 陽性化에 대한 農民의 意思를 把握코자 동일한 設問內容으로 方法, 對象, 時點을 다르게 하여 5회에 나누어 調査하였다.

1. 通信員 調査

가. 標本選定方法

當研究院 現地通信員 희망자 11,600명 가운데 通信員으로 위촉된 900명과 서울, 부산, 제주도를 제외하고 各道別 農家數에 比例하여 4,000명을 無作爲抽出하되 누락되는 郡이 없도록 하였다.

表 I 通信員 調査 標本の 道別 分布

區 分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農家分布比(%)	11.1	5.7	6.9	12.7	11.3	18.3	17.3	13.6	96.9
標本數(人)	460	240	280	520	470	760	710	560	4,000
應答者數(人)	161	100	81	158	165	241	229	185	1,320
應答率(%)	35.0	41.7	28.9	30.4	35.1	31.7	32.3	33.0	33.0

나. 調査方法

왕복엽서를 이용한 우편조사.

다. 調査期間

1979. 8. 15~8. 30(15日間).

農地法案이 구체적으로 보도되기 前.

라. 分析方法

資料의 處理 및 分析은 SPSS에 의하여 進산 처리했으며, 應答者의 一般의 背景에 의거 區分·分析하였다.

2. 現地調査

가. 標本選定方法

都市近郊, 畚作地, 田作地로 區分, 유의選定된 9個 市郡에서 調査者가 임의選定.

表 2 現地調査 標本の 分布

區 分	標本數	地 域 名
都市近郊	25	경기 화성, 경북 경주, 원성, 전북 전주
畚 作 地	67	전북 김제, 충남 홍성, 충남 부여
田 作 地	59	전남 나주, 충북 음성
計	151	9個 市郡

나. 調査方法

面單位 里長모임과 部落內 農地모임에서 集合 調査方法과 農家訪問으로 個別面談調査를 겸하였다.

다. 調査期間

1979. 9. 7~9. 14(8日間) 農地法案 및 贊反意見 보도 後.

라. 分析方法

전산처리.

3. 忠清南道 委託調査

가. 標本選定方法

忠清南道內에서 平野(論山), 中間(燕岐), 山間(淸陽), 海岸地(瑞山)別로 代表되는 4個郡을 選定하고 郡當 2個面, 面當 5個部落, 部落當 5 戶씩을 유의選定하였다.

나. 調査方法

忠清南道에서 作成한 調査表에 의거 農家訪問面談調査.

다. 調査期間

1979. 7. 1~7. 5(5日間) 農地法制定案 보도 前.

라. 分析方法

忠清南道에서 分析.

4. 江原道 委託調査

가. 標本選定方法

江原道內 春城郡 南面 中 5個里와 洪川郡 化村面 中 2個里의 農家 對象으로 임의 選定.

나. 調査方法

現地調査 內容과 동일한 調査表를 사용 農家訪問 個別面談調査.

다. 調査期間

1979. 9. 8~9. 14(7日間).

라. 分析方法

전산처리.

5. 郡單位 機關長 調査

가. 標本選定方法

郡守, 市·郡 農村指導所長, 郡農業協同組合長, 全員을 상대로 農政에 관한 設問調査 중 현재 回送된 것만 集計함.

表 3 機關長 調査의 標本數

區 分	標本數	應答者數	應答率
郡 守	138	60	43.5
市, 郡 農村指導所長	173	127	73.4
郡 農業協同組合長	138	56	40.6
計	449	243*	54.1

* 1979. 10. 18 現在 回送分임.

나. 調査方法

農政全般에 관한 內容을 郵便調査中임.

다. 調査期間

1979. 8. 15~10. 18.

라. 分析方法

農地制度 改善方案에 관한 設問만 手集計함.

II. 應答者의 一般的 背景

1. 年齡別 分布

應答者의 年齡別 分布를 보면(表 4)와 같다. 平均年齡을 보면 通信員調查가 42세로 젊은 사람이 많고, 現地調查와 江原委託調查는 46세와 47세였다.

2. 學歷別 分布

通信員 및 現地調查는 中卒과 高卒이 30% 이상이며, 平均教育年數가 9.9年과 9.7年으로 中卒 이상에 해당, 全體農民에 비하여 높은 水準이며, 江原委託調查는 國卒이 64.7%이고 平均教育年數도 7.5年으로 비교적 낮았다.

3. 經營形態別 分布

調査應答者의 經營形態別 分布는 (表 6)과 같다.

農地改革法에 의하여 엄격한 의미의 不法經營을 하지 않는 應答者는 自作農이며, 農地의 賃貸借에 의하여 經營하는 比率은 通信員調查 45.3%, 現地調查 31.1%, 江原委託調查는 42.4%였다.

4. 經營規模別 分布

應答者의 經營面積은 全國平均보다 높았다. 農地所有上限線 3町步(3ha) 이상 所有農家는 8.0%였으며, 農地所有上限의 例外地인 開墾地, 干拓地, 果樹園 등이 포함된 面積이기 때문에 現行法上 不法인지 與否는 判別할 수 없다.

表 4 應答者의 年齡別 分布

단위 : 人(%)

區 分	30歲미만	30~39歲	40~49歲	50歲이상	計	平均年齡
通信員 調查	124 (9.4)	381 (28.9)	647 (49.0)	168 (12.7)	1,320 (100.0)	42歲
現地 調查	4 (2.6)	30 (19.9)	76 (50.3)	41 (27.1)	151 (100.0)	46歲
江原委託 調查	10 (10.0)	19 (19.2)	36 (36.4)	34 (34.4)	99 (100.0)	47歲
計	138 (8.8)	430 (27.4)	759 (48.3)	243 (15.4)	1,570 (100.0)	43歲

表 5 應答者의 學歷別 分布

단위 : 人(%)

區 分	國 卒	中 卒	高 卒	大 卒	計	平均教育年數
通信員 調查	232 (17.6)	508 (38.5)	514 (39.0)	64 (4.9)	1,318* (100.0)	9.9年
現地 調查	35 (23.2)	58 (38.4)	49 (32.5)	9 (5.9)	151 (100.0)	9.7年
江原委託 調查	64 (64.7)	23 (23.2)	11 (11.1)	1 (1.0)	99 (100.0)	7.5年
計	331 (21.1)	589 (37.5)	574 (36.6)	74 (4.7)	1,568* (100.0)	9.8年

* 無應答者 2人 제외.

表 6 應答者의 經營形態別 分布

단위 : 人(%)

區 分	自作農	賃借農	自賃借農	賃貸農	賃貸借農	計
通信員 調查	720 (54.5)	7 (0.5)	415 (31.4)	151 (11.4)	27 (2.0)	1,320 (100.0)
現地 調查	104 (68.8)	3 (2.0)	32 (21.2)	12 (8.0)	—	151 (100.0)
江原委託 調查	57 (57.6)	1 (1.0)	23 (23.2)	16 (16.2)	2 (2.0)	99 (100.0)
計	881 (56.1)	11 (0.7)	470 (29.9)	179 (11.4)	29 (1.8)	1,570 (100.0)

- 1) 自作農 : 所有農地 全部를 직접 耕作.
- 2) 賃借農 : 所有農地가 없이 借地만 耕作.
- 3) 自賃借農 : 耕作地中 一部만 借地.
- 4) 賃貸農 : 所有農地의 一部만 賃貸한 自作農.
- 5) 賃貸借農 : 賃貸와 賃借를 겸한 農家.

表 7 應答者의 所有規模別 分布

단위 : 人(%)

區 分	0.5ha 미만	0.5~1.0	1.0~2.0	2.0~3.0	3.0ha 이상	計	平均面積
通信員 調査	71 (5.4)	278 (21.1)	610 (46.2)	251 (19.0)	110 (8.3)	1,320 (100.0)	5,029坪
現地 調査	25 (16.6)	44 (29.1)	54 (35.8)	18 (11.9)	10 (6.6)	151 (100.0)	4,272坪
江原委託 調査	13 (13.1)	34 (34.3)	35 (35.3)	12 (12.2)	5 (5.1)	99 (100.0)	3,852坪
計	109 (6.9)	356 (22.7)	699 (44.5)	281 (17.9)	125 (8.0)	1,570 (100.0)	4,882坪

表 8 應答者의 耕作規模別 分布

단위 : 人(%)

區 分	0.5ha 미만	0.5~1.0	1.0~2.0	2.0~3.0	3.0ha 이상	計	平均面積
通信員 調査	31 (2.4)	210 (15.9)	684 (51.8)	284 (21.5)	111 (8.4)	1,320 (100.0)	5,401坪
現地 調査	20 (13.2)	53 (23.2)	64 (42.4)	20 (13.2)	12 (8.0)	151 (100.0)	4,554坪
江原委託 調査	7 (7.1)	37 (37.4)	37 (37.4)	14 (14.1)	4 (4.0)	99 (100.0)	4,004坪
計	58 (3.7)	282 (18.0)	785 (50.0)	318 (20.3)	127 (8.1)	1,570 (100.0)	5,231坪

5. 地帶別 分布

通信員 調査의 應答者가 거주하는 郡을 耕地率과 畚率에 의하여 耕地率과 畚率이 全國平均보다 높으면 平畚地, 낮으면 山田地라 하고, 耕地率은 높고 畚率이 낮으면 平田地, 이와 반대면 山畚地로 구분하였다.

表 9 通信員 調査 應答者의 地帶別 分布

단위 : 人(%)

區 分	平畚地	平田地	山畚地	山田地	計
通信員 調査	597 (45.2)	181 (13.7)	256 (19.4)	286 (21.7)	1,320 (100.0)

Ⅲ. 分析結果

1. 農地法 制定의 必要性

農地制度 改善方案과 贊反 意見들이 報道된 뒤에 調査한 現地調査와 江原道委託調査에서, 農地法 制定은 必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設問의 應答結果이다.

이 設問에서 必要하다가 70.8%이며, 별관심없다가 19.2%, 必要없다고 答한 사람은 10%였다.

農地法 制定이 必要하다고 答한 70.8%가 필

요하다고 보는 理由는 調査되지 않아 별도 調査가 되어야 하겠다.

表 10 農地法制定에 관한 意見

區 分	필요하다	필요없다	관심없다	計
應答者數(人)	177	25	48	250
構成比(%)	70.8	10.0	19.2	100.0

2. 農地所有上限線에 관한 意見

選擇型으로 된 上限線에 관한 設問의 應答結果分析이다.

農民對象 調査의 應答者數는 1,761名으로 現行 3ha 로 좋다고 答한 사람은 전체의 31.7%에 해당하는 559名이었으며, 오히려 2ha 水準으로 下向調整되기를 바라는 이는 77名으로 4.4%였다.

그 외의 1,125名(63.9%)은 上向調整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 중 農地所有의 面積上限을 없애기 바라는 사람은 484名으로 27.5%에 달했다.

上限線을 上向調整하여 정한다면 5ha 로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가장 많아 360名(20.4%)이었으며, 8ha 와 10ha 로 정하기를 바라는 이는 7.4%와 8.6%의 적은 比率을 보였다(表 11).

表 11 上限線에 관한 調査別 應答者數

단위 : 人(%)

區 分	下 向 2ha	現 行 3ha	上 向 調 整					計	無應答
			5ha	8ha	10ha	撤 廢	小 計		
忠 南 委 託	— ¹⁾	76(38.0)	46(23.0)	—	1(0.5)	77(38.5)	124(62.0)	200	—
通 信 員	62(4.7)	420(32.0)	252(19.2)	89(6.8)	110(8.4)	380(28.9)	831(63.8)	1313	7
現 地 調 查	7(4.7)	45(30.2)	24(16.1)	14(9.4)	37(24.8)	22(14.8)	97(65.1)	149	2
江 原 委 託	8(8.1)	18(18.2)	38(38.4)	27(27.3)	3(3.0)	5(5.1)	73(73.7)	99	—
計	77(4.4)	559(31.7)	365(20.4)	130(7.4)	151(8.6)	484(27.5)	1125(63.9)	1,761	9
行 政 長	— ²⁾	35(14.6)	145(60.7) ³⁾			59(24.7)	204(85.4)	239	4

1) 2) 調査設問에 없었음.

3) 上向內容을 區分않고 調査함.

表 12 上限線에 관한 地域別 應答者數

단위 : 人(%)

區 分	下 向 2ha	現 行 3ha	上 向 調 整					計	無應答	
			5ha	8ha	10ha	절 폐	소 계			
通 信 員 調 查	중 부	9(3.5)	80(30.7)	52(19.9)	18(6.9)	29(11.0)	73(28.0)	172(65.8)	261	—
	호 서	9(3.8)	71(29.7)	48(20.1)	23(9.6)	21(8.8)	67(28.0)	159(66.5)	239	—
	호 남	20(5.0)	116(28.9)	68(17.0)	26(6.4)	34(8.5)	137(34.2)	265(66.1)	401	5
	영 남	24(5.8)	153(37.2)	84(20.4)	22(5.3)	26(6.3)	103(25.0)	235(57.0)	412	2

가. 調査別

調査別로 上限線에 관한 應答結果를 보면 <表 11>에서와 같이 調査時期가 늦은 調査일수록 上向調整되기를 바라는 比率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초 調査된 忠南委託調査에서 應答者가 전혀 없던 8ha 案에 答한 比率이 점차 많아졌으며, 撤廢를 바란 사람이 38.5%에서 마지막 調査된 江原委託調査에서는 5.1%밖에 안되었다.

農地改革法上的 上限線 3ha 制限이 실질적으로 구속력이 없었으며 農民들이 아무 불편없이 지내왔었다는 점과 現行 3ha 應答도 3ha 라는 上限線에 주안을 둔 答이 아니고 현재같은(별불편 없는)狀態를 바라는 點으로 해석되며, 撤廢 또한 上限線이 없어도 별불편 없다는 생각에서 나온 응답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調査가 거듭되면서 農地制度의 改善方案이나 이에 대한 贊反意見 및 구체적인 8ha 案과 5ha 案 등의 매스컴의 영향을 받아 應答者의 意見이 변화되거나 자기 意思의 판단기준을 발

견하여 答한 結果라고 생각된다.

또한 農民이 아닌 郡單位 機關長들을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는 現行 3ha 上限線에 찬성은 14.6%임에 반하여, 上向調整되기를 바라는 比率은 85.4%나 되었다.

나. 地域別

調査農家가 地域적으로 適正配分된 通信員, 調査結果를 地域別로 구분하여 보면 現行 3ha 를 바라는 사람은 영남지역 37.2%가 제일 많으며, 下向調整의 희망자도 5.8%로 제일 많다.

또한 上限線이 필요없다는(撤廢) 이는 호남이 제일 많아 34.2%나 되었다.

上向調整되기를 바라는 應答者 比率은 영남이 제일 적어 57.0%였으며, 다른 地域은 약 66%였다.

다. 地帶別

通信員調査 結果에서 上向調整되기를 바라는 比率은 平畝地가 가장 높아 (68.4%)였으며, 平田地(64.5%) 山畝地(61.3%) 山田地(53.6%)의

表 13 上限線에 관한 地帶別 應答者數

단위 : 人(%)

區	分	下 向 2ha	現 行 3ha	上 向 調 整					計	無應答
				5ha	8ha	10ha	撤 廢	小 計		
通信員調查	平 畓	31 (5.2)	156 (26.4)	112 (18.9)	41 (6.9)	62 (10.5)	190 (32.1)	405 (68.4)	592	5
	平 田	8 (4.4)	56 (31.1)	37 (20.5)	14 (7.8)	12 (6.7)	53 (29.5)	116 (64.5)	180	1
	山 畓	10 (3.9)	89 (34.8)	55 (21.5)	15 (5.9)	17 (6.6)	70 (27.3)	157 (61.3)	256	—
	山 田	13 (4.6)	119 (41.8)	48 (16.8)	19 (6.7)	19 (6.7)	67 (23.5)	153 (53.6)	285	1

表 14 上限線에 관한 年齡別 應答者數

단위 : 人(%)

區	分	下 向 2ha	現 行 3ha	上 向 調 整					計	無應答
				5ha	8ha	10ha	撤 廢	小 計		
通信員調查	30 세 미 만	6 (2.9)	54 (43.9)	17 (13.8)	7 (5.7)	5 (4.1)	34 (27.6)	63 (51.2)	123	1
	30 ~ 39	19 (5.0)	133 (35.1)	71 (18.7)	26 (6.9)	36 (9.5)	94 (24.8)	227 (59.9)	379	2
	40 ~ 49	26 (4.0)	194 (30.1)	131 (20.3)	48 (7.4)	47 (7.3)	199 (40.9)	425 (65.9)	645	2
	50 세 이 상	11 (6.6)	39 (23.5)	33 (19.9)	8 (4.8)	22 (13.3)	53 (31.9)	116 (69.9)	166	2

表 15 上限線에 관한 學歷別 應答者數

단위 : 人(%)

區	分	下 向 2ha	現 行 3ha	上 向 調 整					計	無應答
				5ha	8ha	10ha	撤 廢	小 計		
現地 및 江原委託	國 卒*	9 (9.2)	32 (32.7)	27 (27.6)	14 (14.3)	11 (11.2)	5 (5.1)	57 (58.2)	98	1
	中 卒	3 (3.7)	20 (25.0)	22 (27.5)	13 (16.3)	12 (15.0)	10 (12.5)	57 (71.3)	80	1
	高 卒	3 (5.0)	10 (16.7)	11 (18.3)	13 (21.7)	16 (26.7)	7 (11.7)	47 (78.3)	60	—
	大 卒*	—	1 (10.0)	2 (20.0)	1 (10.0)	1 (10.0)	5 (50.0)	9 (90.0)	10	—
通信員調查	國 卒*	17 (7.4)	83 (36.1)	41 (17.8)	9 (3.9)	14 (6.1)	66 (28.7)	130 (56.5)	230	2
	中 卒	31 (6.1)	171 (33.9)	94 (18.6)	38 (7.5)	34 (6.8)	137 (27.1)	303 (60.0)	505	3
	高 卒	14 (2.7)	161 (31.3)	103 (20.1)	38 (7.4)	48 (9.3)	150 (29.2)	339 (66.0)	514	2
	大 卒*	—	5 (7.8)	14 (21.9)	4 (6.2)	14 (21.9)	27 (42.2)	59 (92.2)	64	—

* 국졸 이하는 국졸에, 대졸 이상은 대졸에 포함.

순으로 되어 있어 耕地가 集團化되었거나 상대적으로 機械化가 유리하여 大面積經營이 가능한 地帶일수록 上向調整되기를 바라는 比率이 높았다.

또한 畓作地帶는 田作地帶보다 上向調整되기를 바라며 이는 畓作이 田作에 비하여 大規模經營이 유리하거나 가능한 理由에서인 것으로 생각된다.

라. 年齡別

應答者의 年齡이 많을수록 上限線이 上向調整되기를 바랐다.

이는 應答者의 年齡과 經營規模, 또는 家族數, 教育中인 子女數 등에 의하여 所要되는 所得水

準 등에도 영향은 있겠지만 젊은층에 비하여 農地改革에 대한 생각이 남아 있어 3ha 이상 所有의 現行法上 위법성을 意識한 점과 所有增大를 營農規模擴大 이외의 방법으로 피하는 젊은층에 비하여 安定된 所得을 바라는 老壯年層은 營農規模擴大만이 所得增大로 생각하는 이유 때문이라 생각된다.

마. 學歷別

上限線에 관한 應答을 教育水準別로 보면 學歷이 높을수록 上向調整되기를 바라고 있다.

上限線이 上向調整되기를 바라는 應答比率은 通信員調查에서 國卒 56.5%, 中卒 60.0%, 高卒 66.0%, 大卒 92.2%였으며 現地調查와 江原

表 16 上限線에 관한 經營形態別 應答者數

단위 : 人(%)

區 分	下 向	現 行	上 向 調 整					計	無應答	
			2ha	3ha	5ha	8ha	10ha			撤 廢
現江 地原 및 委 託 託	貸 借 農	35 (7.9)	157 (35.3)	86 (19.3)	30 (6.7)	36 (8.1)	101 (22.7)	253 (56.9)	445	—
	自 作 農	23 (3.2)	235 (32.8)	142 (19.8)	44 (6.1)	60 (8.4)	213 (29.7)	459 (64.0)	717	2
	賃 貸 農	4 (2.2)	35 (19.7)	33 (18.5)	18 (10.1)	18 (10.1)	70 (39.3)	139 (78.1)	178	—
通調 信 員查	貸 借 農	8 (13.1)	20 (32.8)	16 (26.2)	8 (13.1)	7 (11.5)	2 (3.3)	33 (54.1)	61	4
	自 作 農	6 (3.8)	41 (25.8)	39 (24.5)	23 (14.5)	29 (18.2)	21 (13.2)	112 (70.4)	159	3
	賃 貸 農	1 (3.3)	2 (6.7)	7 (23.4)	12 (40.0)	4 (13.3)	4 (13.3)	27 (90.0)	30	—

表 17 上限線에 관한 耕地所有 規模別 應答者數

단위 : 人(%)

區 分	下 向	現 行	上 向 調 整					計	
			2ha	3ha	5ha	8ha	10ha		撤 廢
通 信 員 調 查	0.5ha 미만	10 (14.7)	38 (55.9)	8 (11.7)	1 (1.5)	1 (1.5)	10 (14.7)	20 (29.4)	68
	0.5~1.0ha	26 (9.4)	107 (38.8)	48 (17.4)	16 (5.8)	18 (6.5)	61 (22.1)	143 (51.8)	276
	1.0~2.0ha	19 (3.1)	218 (35.8)	115 (18.9)	39 (6.4)	41 (6.7)	177 (29.1)	372 (61.1)	609
	2.0~3.0ha	6 (2.4)	50 (19.9)	64 (25.5)	21 (8.4)	31 (12.4)	79 (31.5)	195 (77.7)	251
	3ha 이상	1 (0.9)	7 (6.4)	17 (15.6)	12 (11.0)	19 (17.4)	53 (48.6)	101 (92.7)	109

委託調查에서는 國卒 58.2%, 中卒 71.3%, 高卒 78.3%, 大卒 90.0%였다.

바. 經營形態別

經營形態別로 上限線에 관한 應答結果를 보면 <表 16>과 같다.

上向調整되기를 바라는 比率은 賃貸農이 높으며, 賃借農이 낮다.

賃借農은 현재 3ha보다 오히려 下向調整(2ha)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通信員調查에서 7.9%, 現地 및 江原委託調查에서 13.1%나 되었다.

所有農地の 經營能力이 부족하여 일부의 農地를 賃貸한 賃貸農이 上向調整되기를 바라는 것은 經營面積의 擴大보다는 所有面積의 擴大에 관심이 있는 것이며, 所有農地の 부족으로 農地를 賃借經營하는 借地農의 上向調整 希望比率이 낮은 것은 所有農地面積의 擴大가 불가능하여 農地의 轉讓을 염려한 결과로 생각된다.

사. 所有規模別

所有農地가 많을수록 上限線의 上向調整을 바라는 사람의 比率이 높다.

0.5ha 미만의 農地는 上向되기를 바라는 率은 29.4%에 불과한데 비하여, 오히려 下向調整(2ha)되기를 바라는 農地가 14.7%나 되었으며, 現行 3ha로 좋다가 55.9%나 되었다.

현재 所有規模가 3ha 이상인 農地가 現行대로 3ha로 좋으나, 下向조정되기를 바라는 수는 그 수가 비록 7人(6.4%)과 1人(0.9%)인 적은 수이지만 現行 農地改革法의 上限線 3ha가 구속력이 없는 증거이며, 應答者가 자신을 법대두리 밖에 두고 보는 경향이 있는 좋은 예이다.

아. 耕作規模別

上限線에 관한 應答內容을 耕作規模別로 보면 規模가 적을수록 下向調整이나 現行에 答한 사람이 많으며, 規模가 커질수록 上向調整되기를 바라는 이가 많다. 上向調整 가운데서도 規模가 커질수록 上限線이 높게 되기를 바라거나 撤廢되기를 바라는 사람의 比率이 높아진다.

자. 機關別

機關別로 上限線에 대한 應答內容을 보면 <表 19>와 같다.

表 18 上限線에 관한 耕作規模別 應答者數

단위 : 人(%)

區 分	下 向	現 行	上 向 調 整					計	
			2ha	3ha	5ha	8ha	10ha		撤 廢
通 信 員	0.5ha 미만	2 (6.7)	16(53.3)	6(20.0)	1 (3.3)	—	5(16.7)	12(40.0)	30
	0.5 ~ 1.0	24(11.5)	79(37.8)	37(17.7)	11 (5.3)	13 (6.2)	45(21.5)	106(50.7)	209
	1.0 ~ 2.0	28 (4.1)	258(37.9)	117(17.2)	41 (6.0)	45 (6.6)	191(28.1)	394(57.9)	680
	2.0 ~ 3.0	8 (2.8)	60(21.1)	70(24.6)	22 (7.7)	35(12.3)	89(31.3)	216(76.1)	284
	3.0ha 이상	—	7 (6.4)	22(20.0)	14(12.7)	17(15.4)	50(45.5)	103(93.6)	110
忠 南 委 託	0.5ha 미만	—	22(48.9)	5(11.1)	—	1 (2.0)	17(37.8)	23(51.1)	45
	0.5 ~ 1.0	—	28(45.9)	12(19.7)	—	—	21(34.4)	33(54.1)	61
	1.0 ~ 2.0	—	22(41.5)	15(28.3)	—	—	16(30.2)	31(58.5)	53
	2.0 ~ 3.0	—	4 (14.8)	10(37.0)	—	—	13(48.2)	23(85.2)	27
	3.0ha 이상	—	—	4(28.6)	—	—	10(71.4)	14(100.0)	14
現 地 및 江 原 委 託	0.5ha 미만	5(19.2)	7(26.9)	9(34.6)	—	3(11.6)	2 (7.7)	14(53.9)	26
	0.5 ~ 1.0	5 (6.9)	20(27.8)	21(29.2)	9(12.5)	7 (9.7)	10(13.9)	47(65.3)	72
	1.0 ~ 2.0	4 (4.0)	27(26.7)	26(25.7)	18(17.8)	17(16.8)	9 (8.9)	70(69.3)	101
	2.0 ~ 3.0	1 (3.0)	7(21.2)	5(15.2)	8(24.2)	9(27.3)	3 (9.1)	25(75.8)	33
	3.0ha 이상	—	2(12.5)	1 (6.3)	6(37.5)	4(25.0)	3(18.8)	14(87.5)	16

表 19 上限線에 관한 機關別 應答者數

단위 : 人(%)

區 分	現 行	上 向 調 整			計	無 應 答
		3ha	上 向	撤 廢		
郡 守	9(15.0)	33(55.0)	18(30.0)	51(85.0)	60	—
農 協 長	11(20.0)	34(61.8)	10(18.2)	44(18.0)	55	1
指 導 所 長	15(12.1)	78(62.9)	31(25.0)	109(87.9)	124	3

現行 3ha를 그대로 두자고 답한 사람의 比率은 農協長이 제일 많아 20.0%이며, 郡守가 15.0%, 指導所長이 12.1%였다.

차, 上限線調整의 贊反理由

現地調査 對象者에게 上限線調整에 관한 贊反理由를 물은 應答結果이다.

上向調整이나 撤廢에 대하여 反對하는 者 가운데 48.5%는 農地가 投機의 對象이 될 것을 염

려하였으며, 贊成者의 50.7%가 農業機械化를 이유로 답하였다.

이는 지난 8月末 當研究院이 主管한 “農地制度改善方案에 관한 세미나”의 討論結果와 비슷하며, 農民 스스로의 뜻이든 보도내용을 인식한 결과이든 간에 贊反理由의 主要爭點은 投機가 조장된다는 염려였다, 農業機械化의 先決問題이다, 아니다, 등이 되고 있다.

表 20 上限線 調整의 贊反理由

區 分	應答者數	構成比
贊 成	農業機械化를 위하여	36 50.7
	企業農 育成을 위하여	14 19.7
	營農 의욕의 高취	11 15.5
	所有上向을 위하여	10 14.1
反 對	投機의 염려	16 48.5
	現在 不便없다	9 27.3
	農地의 偏重 所有 염려	8 24.2

3. 貨貸借 許容에 관한 意見

現 農地改革法上 금하고 있는 小作(貨貸借)制를 계속 금지시킬 것인가, 許容할 것인가의 設問에 대한 應答結果의 分析이다.

農民對象 調査의 無應答者 55名을 제외한 1,693名 가운데 貨貸借의 禁止를 바라는 사람은

18.4%인 311명이었으며, 80% 이상이 法的인 保護下에 許容되기를 바라고 있다.

賃貸借의 許容을 바라는 比率이 이렇게 높은 것은 본의아니게 不法化되어 있는 賃貸借農이 43.9%나 되어 있는 현실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생각된다.

가. 調査別

賃貸借의 許容에 관한 調査別 結果는 上限線에 관한 結果와 같이 그 調査時期가 늦어질수록 許容希望 比率이 높아지고 있어, 이 또한 매스컴에 의하여 法的 制裁를 받지 않고 행하여지던 賃貸借가 不法이었다는 새로운 불안과 현재 행하여지는 賃貸借는 계속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불가피한 現狀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결과라 하겠다.

〈表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지되기 바라는 이가 忠南委託調査에서는 20.2%나 되었으나, 점점 줄어 마지막 행한 江原委託調査에서는 6.1%밖에 안되었다.

表 21 賃貸借에 관한 調査別 應答者數 單位：人(%)

區 分	禁 止	許 容	計	無應答
忠南委託	36(20.2)	142(79.8)	178(100.0)	22
通 信 員	244(19.2)	1,027(80.8)	1,271(#)	49
現地調査	25(17.2)	120(82.8)	145(#)	6
江原委託	6(6.1)	93(93.9)	99(#)	—
計	311(18.4)	1,382(81.6)	1,693(#)	55
行政長	37(15.3)	255(84.7)	242(#)	1

表 22 賃貸借에 관한 地域別 應答者數 單位：人(%)

區 分	禁 止	許 容	計	無應答
중 부	52(20.7)	199(79.3)	251(100.0)	10
호 서	43(18.8)	186(81.2)	229(100.0)	10
호 남	82(21.2)	305(78.8)	387(100.0)	19
영 남	67(16.6)	337(83.4)	404(100.0)	10

나. 地域別

通信員調査 結果를 地域別로 구분하여 보면 〈表 22〉 許容되기 바라는 比率은 嶺南 83.4%,

湖西 81.2%, 中部 79.3%, 湖南 78.8%의 순이었다.

다. 地帶別

通信員調査의 地帶別 賃貸借의 許容을 바라는 比率은 〈表 23〉과 같이 平畚地와 山田地가 79% 정도로 비슷하였으며, 平田地와 山畚地가 83.2%와 84.0%로 비슷하였다.

表 23 賃貸借에 관한 地帶別 應答者數 單位：人(%)

區 分	禁 止	許 容	計	無應答	
通 信 員 調 查	平 畚	118(20.6)	456(79.4)	574(100.0)	23
	平 田	29(16.8)	144(83.2)	173(#)	8
	山 畚	40(16.0)	210(84.0)	250(#)	6
	山 田	57(20.8)	217(79.2)	274(#)	12

라. 年齡別

通信員調査와 現地 및 江原委託調査에서 賃貸借 許容을 바라는 比率을 年齡別로 보면 年齡이 많을수록 높다.

이는 年齡이 많을수록 賃貸借農이 많다는 理由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賃貸借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과 耕作能力이 점점 적어지나 所有農地의 판매보다는 賃貸에 의한 노후생활을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表 24 賃貸借에 관한 年齡別 應答者數 單位：人(%)

區 分	禁 止	許 容	計	無應答	
通 信 員	30세 미만	27(22.3)	94(77.7)	121(100.0)	3
	30 ~ 39	78(21.2)	290(78.8)	368(#)	13
	40 ~ 49	112(18.0)	511(82.0)	623(#)	24
	50세 이상	27(17.0)	132(83.0)	159(#)	9
現 地 及 江 原	30세 미만	3(21.4)	11(78.6)	14(#)	—
	30 ~ 39	8(17.0)	39(83.0)	47(#)	2
	40 ~ 49	12(11.6)	99(88.4)	112(#)	—
	50세 이상	7(9.9)	64(90.1)	71(#)	4

또한 所有面積이 적은 젊은층은 他産業 分野에 전직할 수 있으나, 老年層일수록 賃借를 하더라도 農業에 계속 종사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 등이 작용한 것 같다.

마. 學歷別

教育水準別 賃貸借許容 關係를 通信員調查結果에서 보던 <表 25>와 같다.

學歷이 높을수록 賃貸借의 許容을 바라는 比率은 높아 大卒에서 89.1% 高卒 81.6%, 中卒 80.0%, 國卒以下에서 78.6%이다.

表 25 賃貸借에 관한 學歷別 應答者數

區	分	禁止	許容	計	無應答
通信員	국졸	47(21.4)	173(78.6)	220(100.0)	12
	중졸	97(20.0)	389(80.0)	486(")	22
	고졸	92(18.4)	407(81.6)	499(")	15
	대졸	7(10.9)	57(89.1)	64(")	—

바. 經營形態別

農地賃貸借에 관한 應答結果를 經營形態別로 보던 許容되기를 바라는 比率은 所有農地의 일부를 賃貸하고 있는 賃貸農이 가장 높아 通信員調查에서 95.3%, 現地 및 江原調查에서 96.7%나 되며, 借地農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自作農이 제일 낮은 比率이다.

現行法上 不法化되어 있는 農地賃貸借의 現狀을 合法化시켜 주기를 바라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表 26 賃貸借에 관한 經營形態別 應答者數 단위 : 人(%)

區	分	禁止	許容	計	無應答
現江地 및 原	賃貸農	7(11.9)	52(88.1)	59(100.0)	2
	自作農	23(14.7)	134(85.3)	157(")	4
	賃貸農	1(3.3)	29(96.7)	30(")	—
通信員	賃貸農	79(18.5)	348(81.5)	427(")	22
	自作農	157(22.5)	541(77.5)	698(")	22
	賃貸農	8(4.7)	163(95.3)	171(")	7

현재 賃貸借에 의한 經營을 하고 있으면서도 賃貸借의 禁止를 바라는 경우는 通信員調查에서 87名, 現地 및 江原委託調查에서 8名이나 된다.

이는 位土의 경우가 많겠지만 小作을 禁하고 있는 法이 구속력이 없다는 유명무실한 증거이다.

사. 耕作規模別

耕作規模別로 賃貸借 許容希望 比率을 보던 <表 27>에서와 같이 그 차이는 심하지 않으나, 耕作面積이 적을수록 賃貸借의 許容을 바라고 있다. ↓

이는 耕地購入 能力은 없어도 耕作能力에 여유가 있는 小農層이 賃借에 의한 耕作規模擴大를 바라는 點과 合法的인 借地로 항상 弱者의 入場에 서는 賃借農(小作農)이 法的 保護를 받 고자 하는 점 등의 結果로 생각된다.

表 27 賃貸借에 관한 耕作規模別 應答者數 단위 : 人(%)

區	分	禁止	許容	計	無應答
通信員	1ha 미만	41(17.8)	190(82.2)	231(100.0)	10
	1~2ha	123(18.6)	537(81.4)	660(")	24
	2ha 이상	80(21.0)	300(79.0)	380(")	15
現江地 및 原	1ha 미만	9(9.3)	88(90.7)	97(")	2
	1~2ha	13(13.1)	86(86.9)	99(")	2
	2ha 이상	9(18.8)	39(81.3)	48(")	2

아. 機關別

賃貸借制에 관한 機關別 應答內容을 보던 許容을 바라는 比率이 다 같이 80%선을 넘어 郡守 86.4%, 指導所長 85.0%, 農協長 82.1%이었다 <表 28>.

表 28 賃貸借에 관한 機關別 應答者數

區	分	禁止	許容	計	無應答
郡守		8(13.6)	51(86.4)	59(100.0)	1
農協長		10(17.9)	46(82.1)	56(")	—
指導所長		19(15.0)	108(85.0)	127(")	—

자. 賃貸借許容의 贊反理由

賃貸借許容을 찬성하는 이유는 農地에 비하여 勞動力이 많은 農家를(借地農) 위하여가 45.8%로 가장 많고, 勞動力에 비하여 農地가 많은 農家(賃貸農)을 위하여가 22.9%이며, 위의 두 경우에 관계없이 勞動力을 最大로 이용하기 위하여가 24.1%로서 賃貸借許容을 바라는 사람 중 92.8%는 그 理由를 所有農地와 勞動力間의 均衡을 유지하기 위하여 라고 答하였다.

表 29 賃貸借許容의 贊反 理由

區	分	應答者數	構 成 比
贊	農地不足 農家の 勞動力利用	38	45.8
	勞動力不足 農家の 農地利用	19	22.9
	勞動力을 利用한 所得增大	20	24.1
	現實의 合法化	3	3.6
成	農業 機械化	3	3.6
	反		
對	投機의 염려	10	52.6
	收量減少	5	26.3
	小作制의 부활	4	21.1

反對理由는 上限線調整에서와 같이 投機目的으로 農地를 買入, 賃貸할 可能性에 대한 염려가 52.6%로 제일 많으며, 收量減少를 염려하는 사람이 26.3%, 과거와 같은 地主나 小作人이 다시 생길 것을 염려하는 이가 21.1%였다.

IV. 要約 및 結果

本 調査의 應答內容을 要約해 보면 農地法 制定은 필요하며 (70.8%), 農地所有上限線은 撤廢

되거나 上向調整되어야 있고(63.9%), 農地의 賃貸借는 法的으로 許容(81.6%)되어야 한다는 結論을 얻을 수 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農地法을 制定하되 所有面積이나 賃貸借의 法的制限을 가능한 限 풀어 자유스럽게 만들기를 바란다. 이러한 法制定을 누가 더 바라느냐를 調査結果에서 보면

1. 田作地보다는 畚作地 거주자,
2. 젊은층 보다는 老年層,
3. 學歷이 높은 사람,
4. 賃借農보다는 賃貸農,
5. 小農보다는 大農,
6. 農民보다는 機關長으로 要約 할 수 있으며, 上限線의 上向調整의 贊成 이유는 부족한 農業勞動力의 해결책인 農業機械化의 先決問題라는 점(50.7%)과, 反對理由는 農地가 投機對象으로 될 염려가 있다는 점(48.5%)이 지배적이며, 賃貸借許容의 贊成理由는 農家別 耕作農地와 勞動力 간의 均衡유지(92.8%)와 反對理由로 上限線에서와 같이 投機염려가(52.6%)가 지배적이다.